



크레페믹스 배합 매뉴얼 영업비밀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18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정13년(와) 제7445호
판결 일자	2002. 10. 1.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유니피알		
피고	1. 라이트크로스 주식회사, 2. A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영업 비밀	크레페믹스 배합 매뉴얼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유용성, 비공지성		

02 사건 개요

원고는 크레페판매점의 프랜차이즈 체인을 주재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원고의 전 직원이다. 피고 A는 퇴사 후 피고회사인 라이트크로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유사한 크레페판매점의 프랜차이즈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크레페믹스액의 재료 및 배합비율은 “영업비밀”로서 주장하나, 피고가 퇴사 후 주재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에서 매뉴얼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당 매뉴얼의 사용금지 및 내용삭제를 요구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원고는 독자의 질감과 식감, 맛을 이루는 유용한 정보이며, 영업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비밀문서로 관리되어있었으며 공지되지 않은 영업비밀이다.

원고와 피고의 유사한 배합비율은 타 회사의 배합비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미료도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음이 추정된다.

해당 정보는 초보적인 지식일 뿐이며, 일반적인 지식이다. 따라서 유용성과 비공지성이 결여되어있다. 또한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바, 영업비밀이 아니다.

들어가는 가루의 중량이 다르며, 이러한 정보는 개발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 독자적인 노하우이다. 강한 유사성이 반드시 영업비밀을 사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영업비밀의 성립과 그 사용에 관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정보가 크레페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별도의 입증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비밀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용한지 증거상 확실치 않으며, 조미료가 특정된 것 또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의 '유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은 해당 내용이 피고가 이미 타 회사의 매뉴얼로서 제작 완료한 것으로 이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며, 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청구 또한 이유 없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비밀로서 취급되고 있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영업비밀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혹은 보유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영업상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한다.